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3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김소희 · 김선교 · 임이자
김상훈 · 우재준 · 백종현
안상훈 · 이현승 · 조정훈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

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이하 “에너지요금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에너지요금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공급규정”을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급규정) ① <u>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u>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u>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u>	제20조(공급규정) ① <u>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이하 “에너지요금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u>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u>에너지요금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u>

1. ~ 4. (생략) ④ ~ ⑧ (생략)	승인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